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대한민국

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◇◇◇

####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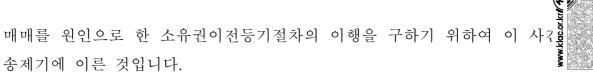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○○. ○. 이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3,000만원에 불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300만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, 잔대금은 19○○. 6. 15.부터 20○○. 6. 15.까지 매년 6. 15.에 금 300만원씩 총 9회에 걸쳐 분납・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원고는 20〇〇. 6. 15.까지의 분납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○○. ○. ○.



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 국유재산불하계약서

1.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영수증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# 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100㎡. 끝.

				_ 6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	www.klac.
		기 간	※ 아래(2)참조	WW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·인지액 : ㅇㅇㅇ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3)참조			
	·송달료 : ○○○원(E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	날부터 2주 이	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	)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소멸시효
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(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9797 판결),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(대법원 1976.11.6. 선고 76다148 판결; 1980.1.15. 선고 79다1799 판결; 1988.9.13. 선고 86다카2908 판결: 1999. 3. 18.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).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이를 사용·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·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(대법원 1999. 3.18.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)

#### ※ (3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

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상 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